

다문화 가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제 소고

Legal System of Protection and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이 승 우*
(Seung-woo Lee)

〈차 례〉

- | | |
|----------------|--------------------|
| I. 서 론 | IV.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 |
| II.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 V. 결 어 |
| III. 다문화가족지원법 | |
-

I. 서 론

1.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과의 혼인은 1990년대 이후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여성과 혼인하는 한국남성의 계층도 초기의 농어촌 남성들에서 일용직 노동자, 사업가, 자영업자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한국은 수천 년 동안 세계에 유례가 드문 단일민족 국가로 존재해 오면서 순혈성에 강한 자부심을 갖고 외부에 대하여 배타성을 보여 왔다. 한 번도 역사적으로 다문화사회를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갑작스럽게 국제결혼¹⁾이 증가하면서 한국사회는 여러 가지 혼란을 겪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투고일자 2009년 10월 27일, 심사일자 2009년 10월 30일, 게재확정일자 2009년 11월 14일.

1) 민법은 혼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다른 법령(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에서 결혼, 결혼이민자 등의 용어를 쓰

고 있다. 한국남성과 혼인하는 외국인여성과 그 자녀는, 일정 기간 체류 후 돌아갈 근로자와는 달리, 한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한국사회의 구성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제반 제도나 국민의 의식은 이들을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보편적 인권의 주체로 받아들이는 데에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²⁾

2³⁾-1.

한국 남성의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 증가배경으로는 그 수요의 측면에서 볼 때, 혼인적령기 남녀의 성비의 불균형, 未婚 人口 分포의 지역간 불균형, 여성의 고학력화, 경제활동참여 증가 및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晩婚化 및 非婚化 경향 등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경제·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농촌 및 도시의 저소득층 미혼남성, 그리고 중년의 이혼 남성은 국내에서 배우자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한편 공급 측면에서는 중국,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몽골 등 아시아 저개발국 여성 중에는 가난에서 벗어나 국민소득이 높은 한국에서의 생활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내의 수요와 국외의 공급이 일치하면서 국내에서 배우자를 구하지 못하는 한국남성들은 결혼중개업자 등의 소개를 통해 아시아여성 등 외국인여성을 배우자로 맞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2-2.

과거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여성의 국적은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등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혼인보다는 결혼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점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혼인 또는 결혼이라는 용어를 문맥이나 관용례에 따라 혼용하기로 한다.

- 2) 이 중 한국으로 이주해 오는 여성들이 대부분 동남아 등 후진국 출신이라는 데서 오는 차별과 인권침해는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등장하였다.
- 3) 2-1.~2-3. 부분은 이승우, “혼인이주여성의 지위와 법적 문제,” 『서울법학』 제16권 제1호(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의 일부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동 논문을 참조할 것.

동남아시아, 몽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그 국적이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외국여성과 국제결혼하는 한국남성의 계층도 농촌 노총각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총각의 외국여성과의 혼인의 한국 전체 국제결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농촌에 있어서의 외국여성과의 혼인비율은 과거에 비해 현격히 높아지고 있다.

결혼 당시 한국인 남편의 연령은 1990년대에는 30대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점차적으로 30대 후반과 더 나아가 40대 이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반면 외국인여성의 연령은 2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없다. 그 결과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 사이의 연령 차이가 더욱 커지고 있는바, 이는 부부관계에서 여러 형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자녀출산 및 양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3.

한국남성과 외국인여성의 국제결혼의 주요한 문제점으로는 혼인의 인신 매매적 성격,⁴⁾ 국적취득전의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한 인권침해,⁵⁾ 원활치 못한 언어소통으로 인한 한국사회에의 적응지체, 경제적 빈곤,⁶⁾ 가정폭력,⁷⁾

4) 동남아출신 혼인이주여성들은 대체로 결혼중개업자를 통하여 혼인을 하는데, 막대한 혼인중개 비용은 대부분 한국남성이 지불한다. 그러다 보니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 대부분 비용지급자인 한국남성의 관점에서 이루어져 상대 여성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상당히 빈약하고 부정확한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혼인 후 부부간의 신뢰를 잃게 하고 나아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 결혼과정 중 선물비, 중개수수료 등 많은 비용을 지불한 한국남성들은 배우자를 배우자로서가 아니라 돈을 주고 사온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향도 보인다. 이주여성에 대하여 행해지는 한국남편의 성적 학대와 폭력의 원인 내지 배경에는 위에서 본 매매혼적 성격도 있다고 하겠다.

5) 혼인이주여성은 한국국적을 취득하기까지는 불안정한 신분(본국으로의 강제퇴거 위협)으로 인하여 부당한 처우와 인권침해가 있어도 이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다. 국적취득 전에 이혼을 하면 본국으로 강제퇴거 된다는 점과 국적취득에 남편의 협력이 필요한 점을 악용하여 남편과 그 가족이 이주여성을 지배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예도 흔하다. 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가 특히 국적취득 이전에 많이 일어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또한 외국인으로 있는 동안에는 국내법이 당연히 적용되지 아니하여 사회보장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혼인이주여성에게 국적취득은 그의 신분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이다.

자녀의 교육·양육,⁸⁾ 인종적 차별⁹⁾ 등을 들 수 있다.

3.

한편 최근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화에 따라 이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그 일환으로 외국인력의 도입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도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7년 12월 31일 기준 국내체류외국인은 1,066,273명으로 이는 인구의 2.19%에 해당된다. 1990년의 체류외국인 수 49,507명, 인구대비 0.11%에 비해 볼 때 그 증가추세가 지속적이고 급격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표 1]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비율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체류외국인	49,507	269,641	491,324	747,467	910,149	1,066,273
인 구	44,553천 명	44,553천 명	45,985천 명	48,294천 명	48,297천 명	48,456천 명
인구대비(%)	0.11	0.60	1.07	1.55	1.88	2.19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료.

- 6) 이주여성들의 한국인 남편은 대부분이 농업, 단순노동, 저위신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일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주여성들 또한 전업주부나 단순노동에 종사하여 경제적으로 저소득 계층에 속한다.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혼인이주여성가구의 소득은 한국 전체 가구소득의 59% 또는 한국 전체 생산직 가구소득의 68% 정도에 불과하다.
- 7) 국제결혼의 매매혼적 성격, 빈곤,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열등감, 문화적 차이·언어소통에 따른 갈등, 인종적 우월감 등으로 인하여 가정불화가 발생하고 가정폭력이 빈번히 일어난다.
- 8) 상당수 혼인이주여성의 자녀들은 부모의 낮은 학력, 사회적 지위, 언어·문화·교육방식의 차이로 인해 가정과 학교교육에서 문제를 드러내게 되는데 언어발달지체 및 문화부적응으로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반대로 폭력성 또는 과잉행동장애를 보이는 정서장애도 나타나고 있다.
- 9) 혼인이주자의 자녀는 피부색·생김새의 다름과 외국인 어머니, 의사소통능력의 부족 등의 이유로 놀림과 집단따돌림을 당하기도 한다. 다문화주의를 받아들이고 있지 못한 교과서, 언론, 동료와 교사의 ‘차별’과 ‘배제’ 때문에 이주여성의 자녀들이 조기에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

[표 2] 장단기 체류외국인 현황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체류외국인 수	629,006	678,687	750,873	747,467	910,149	1,066,273
장기체류외국인 수	271,666	460,261	491,409	510,509	660,607	800,262
단기체류외국인 수	357,340	218,426	259,464	236,958	249,542	266,011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료.

※ 장기체류외국인수 = 등록외국인수 + 거소신고자수

최근의 주요체류 자격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보면 유학생, 취업목적근로자(단순인력, 전문인력), 결혼이민자 등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90일 이하의 단기체류외국인보다 장기체류외국인의 증가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내국인이 소위 3D업종에의 종사를 기피함에 따른 단순노무인력의 부족, 전문직종에 대한 외국인력의 수입개방 정책, 국내에서 신부를 구하지 못하는 계층의 증가, 한국의 위상 향상에 따른 외국유학생의 증가, 방문취업동포에 대한 우대 등에 기인한 현상으로 보인다.

[표 3] 주요체류 자격별 변화 추이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유 학 생	9,705	14,407	20,683	30,101	41,780
전문인력	17,760	17,916	20,333	24,501	29,081
단순노무인력	298,759	315,142	290,486	383,877	477,971
결혼이민자	44,416	57,069	75,011	93,786	110,362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료.

4.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혼인이주자를 포함한 장기체류외국인의 수가 이미 80만 명을 넘어섰으며 그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미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였음과 함께 정주외국인에 대한 보호·지원 등 사회통합정책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07년 5월 17일 외국인에 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어서 2008년 3월 21일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위하여 2007년 12월 14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을 제정하는 한편¹⁰⁾ 행정자치부(2008년 행정안전부로 개편)는 2006년 10월 31일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였다.

위의 법률 및 조례안은 정주외국인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 다문화가족의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 직접적으로 혼인이주자의 보호를 위한 것 등 여러 가지이나 모두 그 내용에 있어 혼인이주자의 보호와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¹¹⁾

필자는 앞서 “혼인이주여성의 지위와 법적 문제”[서울법학 제16권 제1호(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라는 글에서 한국에서의 혼인이주여성의 지위와 법적 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룬 바 있다.¹²⁾ 본고에서는 앞의 글에서 자세히 다루지 아니한, 그러나 혼인이주여성의 지위 내지 인권 향상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위의 법률에 관하여 주요 내용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0) 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2003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11) 종래의 다문화가족 관련 입법과 정책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인권의 차원에서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이와 병행하여 다문화가족의 지원과 통합에 대하여도 입법 및 정책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의 변화된 사회사정이 그 배경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지만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변화 내지 진전이라 생각한다.

12) 전개 “혼인이주여성의 지위와 법적 문제”는 한국남성과 외국인여성과의 국제결혼의 실태 및 문제점과 혼인이주여성의 지위 전반에 관해 다루면서 특히 혼인성립과정(‘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적취득(‘국적법’) 및 체류(‘출입국관리법’)에 중점을 두어 기술하고 있다.

II.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1. 입법의 취지 및 배경

최근 한국은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경제 활동인구의 감소, 이에 따른 외국인력 수요의 증가 및 국제결혼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¹³⁾ 등으로 인하여 국내 체류외국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외국인의 국내체류 유형 또한 외국인 근로자·외국국적동포·결혼이민자·난민 등으로 다양화되는 등 인구구성이 급격히 변화되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생겼다. 또한 그 동안 정부 각 부처가 개별적·단편적으로 외국인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정책의 충돌·중복·부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범정부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외국인정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본 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정책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재한외국인의 한국사회에의 적응을 돕고, 외국인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에서 제정되었는바,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의 기본적인 사항과 종합적·체계적인 외국인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¹⁴⁾

2. 주요내용

이 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외국인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3장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 제4장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 제5장 『보칙』의 5개 장의 2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 국제결혼의 비율이 2000년 총 결혼 건수의 3.7%에서 2005년에는 13.6%(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35.9%)로 증가하였다.

14) 동법 제1조는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재한외국인과 결혼이민자의 정의(제1조)

이 법의 규율대상인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외국인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제5조 내지 제9조)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¹⁵⁾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전문가가 된다.

(4)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제10조 내지 제17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및 그의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하여 대한

15) 주민행정의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위원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조상균·이승우·전진희, “다문화가정 지원 법제의 현황과 과제,” 『민주주의와 인권』 제8권 1호(전남대 5.18연구소, 2008), 157면.

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 정보제공, 상담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 사회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과의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재한 외국인, 영주권자 및 난민도 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 외국인력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그의 법적 지위 및 처우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주권자, 과거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등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입국 및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다.

(5)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제18조 및 제1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 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여 행사를 개최하도록 한다.

(6) 외국인전담직원의 지명·교육 및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설치(제20조)

공공기관의 장은 외국인 민원처리절차를 안내하기 위하여 외국인전담직원을 지정하여 교육을 시킬 수 있고, 국가는 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재한외국인에게 외국어로 민원을 안내·상담하기 위하여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문 제 점

(1) 적용대상

동법은 적용대상을 합법적 한국체류 외국인 일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외국인근로자, 영주권자, 난민 모두 차별방지와 인권 보호 그리고 한국 사회에의 적응 지원과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차별 없이 동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적절한 태도로 생각된다. 다만 동법은 그 적용대상으로서의 제한외국인을 합법체류자에 한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를 불법체류자까지 확대할 경우 사실상 불법체류자의 정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¹⁶⁾ 외국인 체류질서 문란, 사회비용 및 갈등 증가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¹⁷⁾

불법체류자를 법의 보호대상으로 할 것인가의 여부는 그 결정에 고려하여야 할 요소가 많아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려운 중대 국가정책의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동법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국익(외국인 체류질서 문란, 사회비용 및 갈등 방지)을 고려하여 그 적용대상을 합법적 체류 외국인에 한정하는 것은 일용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¹⁸⁾. 다만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불법체류 유형에 따른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불법체류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하여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 즉 불법체류자의 유형에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한국인과 결혼 후 국적취득 전에 이혼하여 불법체류자가 된 결혼이민자, 불법체류자로서 한국국민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불법체류자로서 한국인과의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는 자 등이 있는바, 적어도 이 중 한국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혼자 기르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¹⁹⁾ 불법체류자 중에도 특별한 보호

16) 불법체류자도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면 동법 제3장 소정의 사회적응 및 정착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는 정부가 사실상 불법체류자의 정주를 공인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제한외국인처우 기본법안 검토보고”(2007.2), 9면.

18) 다만 불법체류자의 경우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이 점은 외국인 정책 수립시에(외국인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5조 내지 제9조)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전제보고, 9면).

와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사회적 공론화를 통하여 불법체류자에 대한 종합적 정책과 법제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일부 불법체류자에 대한 보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입법정책적으로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20) 21)}

(2) 주무부처

법 제5조는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가 외국인의 출입국·체류 관리, 국적 부여, 난민인정 등 포괄적인 외국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외국인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제한외국인의 보호정책, 특히 결혼이주민 가족에 대한 보호·지원 정책을 출입국관리 업무의 연장 내지는 동일선상의 업무로 보아 법무부를 외국인 정책의 주무부처로 규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제한외국인의 한국사회에의 적응 및 이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 특히 이주민 가족의 보호·지원업무는 국가 법질서의 유지를 본질적 기능으로 하는 법무부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²²⁾ 법무부가 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 이외에 취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장기 체류 외국인에 대한 보호, 지원 등의 정책은 외국의 경우와 같이 이민청과 같은 별도의 기관을 두어 그곳에서 관장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²³⁾

(3) 실효성 부족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제3장 제10조에서 17조까지에서 제한외국인 등에 대한 처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핵심적 내용을 구성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권고적, 선언적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실효성을

19) 이정민, “제한외국인처우기본법 및 이주민가족지원법률안에 대한 검토,” 『부산법조』 제25호(부산지방방변회사회, 2008), 52~53면.

20) 이정민, 전계논문, 53면

21) 조상균·이승우·전진희, 전계논문, 155면은 불법체류노동자들 간에 태어난 자녀들에 대해서도 동법 제12조 2항의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와 동등하게 양육지원이 가능하도록 동법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22) 이정민, 전계논문, 53면.

23) 이정민, 전계논문, 53면.

담보하지 못한다. 즉 결혼이민자 및 자녀, 영주권자, 난민, 전문인력 등 외국인을 폭넓게 보호, 지원한다고 하면서, 그 실행을 담보할 아무런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단순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에 대한 인권옹호, 한국사회에의 적응을 위한 교육, 상담 등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는 식의 선언적 규정을 두는 데 그치고 있다. 정책의 집행에 수반되는 예산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권고적·선언적 규정은 모두 지극히 당연한 교과서적 내용을 담고 있어서, 운영 여하에 따라서는 실효성 없는 장식적 법률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하겠다.²⁴⁾

(4) 지원기간의 지나친 단기화

법 제12조 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어서 제15조는 “제한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12조 제1항에 따른 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이 귀화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초기에는 언어와 문화 등의 차이로 한국생활에 적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지원기간을 국적취득 후 3년이라는 단기로 제한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²⁵⁾ 여러 사정으로 제한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다음에도 위와 같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이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²⁶⁾ 기간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4) 제한외국인처우기본법 발의시 발의자인 정부는 費用推計書를 첨부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 첫째 동법의 시행에 비용이 별로 들지 않는다는 점과 둘째 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 점에서 이 법의 장식적 규정으로의 전락 위험을 엿볼 수 있다고 하겠다.

25) 이정민, 전계논문, 54면; 조상근·이승우·전진희, 전계논문, 157~158면.

26) 특히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에 있어서 이를 국적취득 후 3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자녀의 보호를 포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4.

동법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지원 기구 및 시설에 관한 내용이 너무 부족하다거나 실효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등 일부의 비판이 있으나, 장기체류외국인을 규제 대상으로만 보던 종래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 파악하고²⁷⁾ 외국인 정책의 종합적 수립 및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점은 혼인이주자를 포함한 장기체류 외국인의 지위와 인권 향상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²⁸⁾

이 법은 “그 명칭과 국가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제4조)”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재한외국인 처우에 관한 기본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재한 외국인에 대한 보편적 인권보호와 올바른 다문화주의와 같은 지도적 이념이 좀 더 강하게 동법에 표시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²⁹⁾

III 다문화가족지원법

1. 입법의 경과와 배경

(1) 2007년 11월 19일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7차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2007년 3월 8일 고경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과 2007년 5월 2일 장향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이것이 국회본회의를 통

27) 조상균·이승우·전진희, 전개논문, 154면.

28) 다만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

29) 조상균·이승우·전진희, 전개논문, 158면은 “다문화주의에 걸맞은 자세로 우리나라 국민으로 동화통합시키려는 노력보다는 서로 존중하고 공생할 수 있는 인권적, 다문화주의적 시각이 중요하며 이를 (동 기본법에) 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

과하여 2008.3.21. 공포되었다.

(2) 최근 한국은 국제결혼의 증가 등으로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나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은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부적응과 가족구성원간 갈등 및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순조롭게 통합되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지원책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법은 이러한 목적³⁰⁾으로 결혼이민자 등을 위한 가족상담·부부교육·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 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규정하고 있다.

2. 주요내용

(1)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제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제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제1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0)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제12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5) 사실혼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제14조)

제5조에서 제12조의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도 동법이 준용된다.

3. 문 제 점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는 다문화가족법의 적용 대상인 “다문화가족”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과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12조는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도 동법의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 됨을 명언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의하면 사실혼에 이르지 못한 관계(예컨대 동서, 사통 등)에서 낳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의 그 자녀, 자녀가 없는 사실혼의 경우의 사실혼 배우자, 재혼에 있어서 혼인이주여성이 전혼 등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그 자녀(결혼이민자에 수반하는 가족), 한국국적의 혼혈인 가족 등은 동법의 보호와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동법의 목적을 온전히 실현키 위하여는 위의 자들도 동법의 보호 및 지원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동법의 적용 범위의 확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³¹⁾

31) 정상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법체계 개선 방안 연구,” 『法學論叢』 제26집 제1호(漢陽大學校 出版部, 2009년), 498면; 전형배, “다문화가정 지원의 법과 제도,” 함께 해 오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의 정착과 미래—(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9.4.22.), 22면.

(2)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다문화 가족의 보호·지원에 대하여 일부 구체적 규정을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있어서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라 하지 않고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점은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동법은 성격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내용이 여럿 중복된다는 점에서 아래와 같은 비판을 받고 있다.

(3)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개별법³²⁾이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명칭과 같이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재한외국인 처우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다른 견해도 있다. 즉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의 지원 규정내용도 대부분 구체성을 결여한 채 단지 “...할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는 등의 프로그램적, 선언적 규정으로 되어 있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그 성격(프로그램적 성격의 기본법)에 있어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³³⁾ 이러한 점은 양법의 내용이 여러 사항에서 사실상 중복되는 데에서도 잘 드러난다고 한다. 즉, 제5조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제6조의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생활정보 제공과 한국어 등의 교육 지원, 제7조의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제8조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제9조의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 제10조의 아동의 보육 및 교육 지원, 제13조의 관련 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교육 실시, 제14조의 사설혼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처우, 제16조의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내용과 동일·유사한 중복 규정이라는 것이다.³⁴⁾

(4)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32) 다문화가족 지원법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조의 목적인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다문화가족에도 실현하고 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상의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구체적·개별법이라는 것이다. 정상우, 전개논문, 494면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집행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한다.

33) 동법 제정안에 대하여 국회에 제출한 법무부의 의견[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강경필, “다문화가족지원 법안 검토보고”(2007.11.), 2면].

34) 동법 제정안에 대하여 국회에 제출한 법무부의 의견[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강경필, “다문화가족지원 법안 검토보고”(2007.11.), 3면].

대부분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들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아니라³⁵⁾ 그 내용도 한국화를 위한 것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한국사회에의 적응을 위한 교육과 지원 등이 필요함은 물론이나 다문화적 관점이 결여된 보호와 교육·지원만으로는 다문화가족의 보편적 인권보호도, 진정한 사회통합도 이루어 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다문화주의의 이념이 동법의 목적에 표시되고 각 조문의 내용도 이러한 이념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대상인 다문화가족은 한국국적 취득 전의 외국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자와 귀화자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지위를 갖는 자를 포함하는 데 대하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이라는 차이가 있으나, 한국국적을 취득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보호, 지원과 장기체류 목적의 재한외국인의 처우에 있어 양자를 기본적으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이민청과 같은 기관의 설치³⁶⁾와 함께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통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³⁷⁾ ³⁸⁾

35) 다문화 정책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정상우, 전개논문, 505면).

36)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에 대한 정책은 다문화의 이념을 기반으로 종합적·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외국인 정책 주관 부처(법무부)와 다문화가족 정책의 주관 부처(보건복지가족부)가 달라 부처간에 정책의 중복, 충돌이 일어나고 개별적·현상적 문제의 해결에 치중할 위험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등 다문화 정책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7) 김원섭, “여성결혼이민자 문제와 한국의 다문화정책 —‘다문화가족지원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민족연구』 제36호(한국민족연구원, 2008), 126면; 이정민, 전개논문, 58면; 정상우, 전개논문, 505면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외에 2008년 7월 18일자로 입법예고 된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에 관한 법률안”(http://www.mcst.go.kr/web/dataCourt/ordinance/legislation/legislationView.jsp)을 포함한 3개 법률(안)의 발전적 통합을 제안하고 있다.

38) 또한 실제로 앞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두 법에는 중복된 조항이 많다.

IV.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

1. 입법의 취지 및 배경

행정자치부(2008년 행정안전부로 개편)는 2006년 10월 31일 주민의 생활에 가장 밀착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³⁹⁾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다. 이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는 자체 실정에 맞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거주외국인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⁴⁰⁾

2. 주요내용

(1)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거주외국인⁴¹⁾도 주민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제3조).

(2) 지원대상은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외국인,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이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제5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거주외국인

39)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0)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 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최근 그 수가 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내용은 약간씩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다루기로 한다.

41)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시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조례안 제2조 2호).

수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제4조 및 제6조 2항).

(4)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 범위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층·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이다(제6조).

(5) 지방자치단체별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외국인시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제7조~제11조).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12조).

(7)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주간을 설정하여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등을 실시하고,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외국인을 표창하는 한편,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제14조, 제16조, 제17조).

3. 문 제 점

(1) 보호대상

표준조례안은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과 함께(제5조) 보호대상으로서의 “거주외국인”을 ○○시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2호).

불법체류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와 같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⁴²⁾ 그리고 90일간의 거주를 기준으로 보호와 지원 대상을 가르는 것도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예산문제 등을 고려하였는지 모르나 외국인 문제의 중요성과 그것이 갖고 있는 상징성 그리고 한국의 경제적 규모나 위상에 비추어 볼 때 이 점도 설득력이 없다. 기간제한을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⁴³⁾

42)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질병 등 긴급한 구호가 필요한 경우나 인도적 차원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체류 자격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한다고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43) 조상균·이승우·전진희, 전계논문, 169면.

(2) 자문위원회의 구성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구성되는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에 정작 당사자로서 당해 문제에 관하여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갖고 또한 정통한 외국인은 위원회의 구성에서 제외되어 있다(제7조 참조). 이는 외국인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으로만 파악한 결과로서 부당하다고 하겠다. 외국인 및 외국인가정 대표를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케 하여야 할 것이다.⁴⁴⁾

(3) 지역적 특성의 반영 미흡

표준조례안은 명칭 그대로 외국인 지원과 관련한 표준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각 시·도 및 시·군·구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지원 조례의 제정이 요청된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조례를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실과 특성이 거의 반영되지 아니하고 표준 조례안의 내용을 그대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한다.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V. 결 어

결혼이주민과 그 가족 그리고 이주노동자 등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소수자·약자로서 등장하고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문화주의의 관점에서 종합적·체계적·장기적인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재한 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그리고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의 제정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종합적·체계적·장기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위의 법률과 조례의 세부적 내용보다는 체계와 방향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그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는데, 다문화사회로의 진입 초기단계에 있는 현재의 우리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 나아갈 다문화사회의 모델(이상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라고 생각한다. 일부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한국에서의 다문화관련 정책과 법제가 지나치게 동화주의

44) 조상균·이승우·전진희, 전계논문, 169면.

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든가,⁴⁵⁾ 혼인이주여성의 문제에 대하여 가족유지에 치중한 나머지 인권보호에 소홀하다든가 하는 점에 대하여 좀 더 치열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초기단계에서 외국인 내지 다문화가족에 대한 장기적 정책의 큰 틀이 잘못 설정되었을 경우의 결과는 이 문제가 갖고 있는 폭발력에 비추어, 상상을 넘는 심각한 것이 될 것이다.

다문화 사회의 문제는 여성, 가족, 국내의 산업구조, 인권, 세계화, 국민정서 등 복잡한 요인을 내포하고 있어 해결을 위한 접근에 있어서도 종합적, 체계적,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 다문화사회의 경험을 가진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우리의 사정에 맞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들을 보호·지원하되 지원이라는 이름하에 단순히 한국사회에의 적응과 동화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존중하는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하며⁴⁶⁾ 이때에 주요한 기준은 보편적 인권의 보호가 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국제결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

international marriage,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Act, Proposed Standard Ordinance to Support Resident Aliens

4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그리고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는 모두 사회통합을 그 목적으로 내걸고 있으나, 재한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사회에의 적응 지원을 통한 동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이들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존중하는 가운데에서의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을 위한 實效的 규정은 위 법들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는 비판이 있다(정상우, 전개논문, 499면). “한국의 다문화정책”에 “다문화”가 없다는 일부 논자들의 지적은 다문화주의의 관점에서의 접근이 부족함을 꼬집은 것이라 할 것이다.

46) 그러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다문화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수용, 즉 다문화주의가 외국인(결혼이주자, 정주외국인 노동자 등)이라고 하는 사회적 소수자·약자에 대한 단순한 배려·지원·이해·수용이 아니라 교류와 협력·공존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정책결정자를 포함하여 국민 일반이 갖도록 하는 것이다(김원섭, 전개논문, 126면).

《참고문헌》

- 김원섭, “여성결혼이민자 문제와 한국의 다문화정책 — ‘다문화가족지원법’의 한계와 개선 방안 —,” 『민족연구』 제36호, 한국민족연구원, 2008.
- 이승우, “혼인이주여성의 지위와 법적 문제,” 『서울법학』 제16권 제1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 이정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및 이주민가족지원법률안에 대한 검토,” 『부산법조』 제25호, 부산지방변호사회, 2008.
- 전형배, “다문화가정 지원의 법과 제도,” 『함께 해요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정의 정착과 미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9.4.22.
- 정상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법체계 개선 방안 연구,” 『法學論叢』 제26집 제1호, 漢陽大學校 出版部, 2009.
- 조상균/이승우/전진희, “다문화가정 지원 법제의 현황과 과제,” 『민주주의와 인권』 제8권 1호, 전남대 5.18연구소, 2008.
- 최윤철, “우리나라의 외국인법제에 관한 소고,” 『입법정책』 제1권 제2호, 한국입법정책학회, 2007.12.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안 검토보고,” 2007.2.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강경필, “다문화가족지원 법안 검토보고,” 2007.11.
- 박종보/조용만, “다문화가족지원법 마련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2006.10.

Legal System of Protection and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Seung-woo Lee*

With the increasing cases of international marriages, Korea has currently suffered from many societal disorders. For thousands of years, Koreans have been a group of people with a higher sense of ethnical simplicity; however, the strikingly increasing number of foreign females has undoubtedly threatened Korean's sense of simplicity. Unlike other foreign laborers who return to their hometown after a certain period, those foreign females who marry Korean males are naturalized to be members and have permanent residence in Korea. Hence, it can be perceived that several problems on female immigrants' rights have been revealed.

Apparently, Korea has become a multicultural society gradually owing to the increasing number of long-staying foreigners, including marital immigrants. This phenomenon also demonstrates that it is indispensable to carry out some policies to protect or support these foreigners in Korea. On these grounds, Korean Parliament has enacted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Act." Furthermore, "Proposed Standard Ordinance to Support Resident Aliens" is also established. All of these regulations focus on protection and support for the marital immigrants.

The author has discussed the positions of marital immigrants in Korea and its legal problems in previous essay generally. In this paper, the

* Professor, Sungkyunkwan Law School.

author will chiefly discuss the importance of marital immigrants' positions and human rights, and meantime, examine the existing problems. The following will focus on these regulations and their existing legal problems.

First of all, it is regulated that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can only apply to legal-staying foreigners in Korea, not other illegal-staying foreigners in Korea. But it is evident that all of the marital immigrants and their children, foreign laborers, long-staying foreigners, and refugees also need some supports or protection so that they can adapt themselves to Korean society without discrimination. Hence, it may call it in question if all of the illegal-staying foreigners are excluded from this regulation, without considering each situation or type of the illegal-staying foreigners. As the illegal-staying foreigners also need some supports or special protection, it is much better to provide them appropriate supports or prot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situation of each case. Secondly, it's better to set up an institution which deals only with the supports and protection for those long-staying foreigners, such as immigration institution. If there is difficulty in setting up such an institution so immediately, then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could take charge of this affairs focusing on the supports and protection for these foreigners, but not on restraints or penalty. Next, most of these regulations are declarative and advisory, without any actual effects. Hence, it is likely that these regulations will become 'decorative' regulations. Lastly, it seems that it is not necessary to regulate that foreigners can receive language and cultural education, child care, and education for children only within 3 years after obtaining nationalities because some of foreigners still need some supports after this regulated period of time. So it appears appropriate to abolish the limit of time in this item.